

제출서류

대상자	제출서류(택1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 소득자 (상시, 일용) •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• 프리랜서 등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* 사업장, 국세청 발행 2. (별도서식) 고용·임금·무급휴직·소득감소신고서 - 근로계약체결서 - 급여지급명세서 -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
<p>사업자 (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소득금액증명원 2.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(세금)계산서 3.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* 사업장, 국세청 발행 4. (별도서식) 소득(매출)감소신고서 - 휴·폐업사실증명서 - 매출전표 -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- 거래내역 통장사본
<p>증빙자료가 없는 자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별도서식) 소득(매출)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

문의처



- 보건복지상담센터 **129**
- 주소지 관할 **시군구** 또는 **읍면동주민센터**
-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**1577-9333**

복지로 신청 QR코드



핸드폰으로
QR코드를 스캔 하시면
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,
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
취약계층 가구

한시 생계지원

이렇게 신청하세요



→ 한시 생계지원이란?



기존 복지제도가나 코로나19
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
취약계층을 대상으로
한시 생계비(1회)를 지원합니다.

→ 지원대상

코로나19 피해로 **소득이 감소했으나,**
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
취약계층 가구*

*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 지급, 소득감소, 기준중위소득 75%
이하, 재산 6억원 이하(대도시)
- '21. 3. 1. 기준 주민등록가구

☉ 소득감소 기준

2019~2020년 대비 현재('21. 1. ~ 5.)
소득이 감소한 가구

가구구성

'21. 3.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

소득기준

2019~2020년 대비 현재('21. 1.~ 5.) 소득이 감소하여
가구 소득이 **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인 경우**

(단위: 원)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
기준 중위소득	1,370,873	2,316,059	2,987,963
75%	4인	5인	6인
	3,657,218	4,318,030	4,971,452

재산기준



대도시
6억원 이하



중소도시
3.5억원 이하



농어촌
3억원 이하

☉ 제외대상

-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
긴급복지(생계지원) 대상자
-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
(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,
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, 버팀목자금플러스, 소득안정
지원자금, 피해농업인지원, 피해어업인지원, 피해임업인
지원,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)

→ 신청방법 및 결정



온라인(인터넷, 모바일)

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세대주만 신청 가능(휴대전화 본인인증)

'21. **5. 10.**(월) ~ **5. 28.**(금) 22:00
홀짝제(출생연도 끝자리)



현장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

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 신청가능

'21. **5. 17.**(월) 09:00 ~ **6. 4.**(금) 18:00

[집중 신청기간 운영]

'21. **5. 17.**(월) ~ **5. 28.**(금)

지원금액

1가구 / 50만원 / 1회 지급

* (농어임업인 경영지원)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
바우처(30만원) 사업 중복대상자는 “차액(20만원)
지급가능”

지급 우선순위

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, 부득이 **지급
결정 우선순위**(본인 작성 소득(매출)감소신고서를 제출한
자 중 ①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② 공적
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)를 **적용**할 수 있음